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43
----------	-------

발의연월일 : 2026. 8. 24.

발 의 자 : 황운하 · 정춘생 · 차규근
이해민 · 강경숙 · 김준형
신장식 · 서왕진 · 김선민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경찰청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경찰청장·검찰총장·금융감독원장”을 “경찰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의 중지 등) ① <u>경찰청장·검찰 총장·금융감독원장</u>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에 이 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의 중지 등) ① <u>경찰청장·중대 범죄수사청장·금융감독원장</u>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